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구성 위원 추가〉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184호)

2024. 8.

국 방 위 원 회
전문위원 류 승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임종득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2024. 6. 7.
3. 회부연월일: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실·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을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이를 원활하게 심의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첨단기술을 담당하는 부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실·국장급 공무원도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할 경우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실·국장급 공무원도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위원의 정수를 25명에서 28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6조(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① (생략)	제6조(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 ----28명----- -----. ----- -----.
③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실·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6조제3항제2호1)에서는 법무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실 ·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을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자격]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6조제3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6조
1. 국방부 · 방위사업청 · 합동참모본부 및 각군의 실 · 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및 국방정보본부장 2) 방위사업청 차장 3)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4) 육군, 해군 및 공군 참모차장
2. <u>법무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실 ·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u>	-
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의 장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
4.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이하 “정보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실 · 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 국가정보원 2) 검찰청 3) 경찰청 4) 해양경찰청 5) 국군방첩사령부
5.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 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6조(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③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 법무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실 ·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그런데, 방위산업기술²⁾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등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해 원활히 심의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첨단기술을 담당하는 다양한 관계 부처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른 국가기관의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 사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6조(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① 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방위산업기술의 변경이나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다.

□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실·국장급 공무원도 추가로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방위산업기술

2) 방위산업기술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해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기술을 의미함. 「방위산업기술 지정 고시」(방위사업청 고시)에 따르면 8개 분야(센서, 정보통신, 제어전자, 탄약/에너지, 추진, 화생방, 소재, 플랫폼/구조)의 128개 기술이 방위산업기술로 지정되어 있음(2024.8.14. 기준)

보호에 관한 주요 정책 및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다양한 분야의 기술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³⁾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주로 방산물자·군용전략물자 등과 같이 산업기술 분야와 중점적으로 연계되므로 개정안에서 추가하는 부처 중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3)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①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제3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①법 제7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외교부 제2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기업부차관
2. 특허청장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운영 현황]

- **개요:**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주요정책과 방위산업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
- **주요 심의대상:**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시행 계획, 방산기술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해제 등
- **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구 분	구 성
국방부	장관(위원장), 전력정책국장, 국방정보본부장
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각 군 참모차장
방위사업청	청장(부위원장), 차장
출연기관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정보수사기관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국가정보원 방산안보단장,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장, 해양경찰청 국제정보국장,
관계부처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실·국장급
민간위원	국방부장관 위촉 5인 이상 *현 민간위원(5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침해대응본부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교수,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 **최근 4년간 개최 내역**

구 분	개최 시기	심의 안건	개최 방식
제5회	'20.12월	시행계획 수립, 보호지침 개정	화상회의
제6회	'21.12월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서면
제7회	'22.12월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서면
제8회	'23.5월	방산기술 지정고시 개정	서면
제9회	'23.12월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서면

문 의 처

02)6788-5312